「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고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우편 접수물량이 적은 지역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해 '면 지역 소재 2인이 근무하는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상국 정의

면 지역 소재 2인이 근무하는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장이 선정(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하며,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무실 규모, 운영시간, 제공 서비스 종류 등 운영조건을 반드시 충족

나. 우편창구업무에 따른 위탁수수료

- 국내·국제 접수우편물(통상·소포) 물량을 합산하여 적용
- 월 지급 상한액 설정
- 우표류 판매 등

다. 금융업무 위탁수수료

- 우편환 발행·지급
-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 수입인지 판매
- 현금입출금기 등 설치에 따른 부대업무 등

3. 발령 요청자 : 기반시설기획담당관

별정국·취급국담당 / 김민정 / 2023-04-10